

27회 공인노무사 시험 민소법 총평 및 간략 예시답안

총 평

시험 보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번 민사소송법 문제는 소위 말해 불의타는 아닌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누구에게는 불의타가 될 문제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 가능한 문제였기 때문에 시간 내에 많은 양의 답안을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했어야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문

설문 1은 누가 보더라도 부제소합의임은 분명합니다. 계속 강력하게 출제가 예상 되는 부분이라서 논점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사안 포섭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부제소합의 위반시 구제방법(부제소합의의 성질 및 다투는 방법)은 논점이 아닙니다. 오로지 논점은 명문 규정이 없는 부제소합의가 허용되는 것인지, 그 다음으로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만입니다. 이 부분만을 잘 써야지, 나머지는 쓰나마나한 무익적 기재사항입니다(저같이 논점이 아닌 부분을 쓰는 것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유해적 기재사항입니다).

일단 관리규정 자체에 대한 부분은 논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규정상에 부제소합의 규정을 둔 것이 허용되는지가 첫 번째 논점이고, 다음으로는 부제소합의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가 논점입니다. 특히 위로금 지급에 관한 일절의 분쟁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이기 때문에 법(예컨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불공정하지 않고, 특정한 법률관계의 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인지에 관한 요건이 크게 문제됩니다. 관리규정에 따른 위로금에 관한 일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일종의 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구체적 분쟁이 생기기 전에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여집니다.

설문 2는 변호사대리원칙에 대한 예외(그 중 단독사건 중 소가 1억 원 이하의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에 해당되는지, 배우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될 것인지를 논하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단문(소송고지와 문서의 증거력)

소송고지의 경우에는 그나마 이번 시험에서 약간 불의타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강의 때도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고지 자체는 너무나도 중요한 논점입니다. 다만 작년에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이 출제된 이상 작년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중요한 논점이니 한번 봐야 한다고는 했습니다. 소송고지의 취지와 요건, 절차, 효력을 위주로 써주시면 됩니다.

문서의 증거력은 사례든 단문이든 많이들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거력을 안배하여 답안을 작성하셨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